

# 서 면 답 변 서

질문의원명	우 강 호	소 속	평창군의회
질문대상자	평 창 군 수 (문화관광과장)	일 자	질의 : 1999년 12월 8일 답변 : 1999년 12월 9일
회 의	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결 특위		
<b>【질의요지】</b>			
○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 관련 자료 제출			
<b>【답변요지】</b>			
○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 관련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			
<p>「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근거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안의 장학사업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</li> <li>②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 관리조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99년 11월 18일 강원도 조례 제2734호 공포(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으로 명칭 변경)</li> </ul> <p>붙임 :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 1부.</p> <p>「청소년자립지원기금 증식계획(강원도)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진기간 : 1999년 ~ 2002년(4년간)</li> <li>- 출연금액 : 1,800,000천원(평창군 51,840천원)</li> <li>- 출연금 배정근거 : 시군별 9 ~ 24세 인구 비례 배정</li> </ul> <p>붙임 : 청소년 인구 및 출연금 배정내역 1부.</p>			